

(문의)

미국으로 자동차 블랙박스 수출 시 인증

(답변)

귀사의 제품이 일반 소비자용 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다음의 인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귀사 제품의 자세한 사양 없이 추론한 정보로 귀사제품에 맞춤형 정보가 아닌 미국 전기전자 제품 인증에 대한 일반정보이므로 귀사제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인증/규격 파악을 위한 기본정보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해당여부 및 적용규격/시험항목 등의 상세사항은 해당 인증기관에 귀사제품사 양을 첨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Program) ; 전기안전

▶ 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Program)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 (OSHA, www.osha.gov)에서는 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Program)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법에 따라 OSHA는 미국 내에 있는 민간시험소를 NRTL로 지정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특정 산업용품(37개 분야)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강제합니다.

OSHA에서는 NRTL의 인증업무와 함께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관하였기 때문에, 시험소마다 마크 및 표시사항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OSHA Requirements for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Approval of Products:
www.osha.gov/dts/otpca/nrtl/NRTLarticle.html

지정 시험소는 아래의 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내에 지사를 둔 인증기관이 다수 있으므로 선택하여 접촉 바랍니다.

- Current List of NRTLs: <https://www.osha.gov/dts/otpca/nrtl/nrtllist.html>

기관명	국내지사 대표번호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	02-6371-6000
Curtis-Straus (Bureau Vertitas)	02-555-8922
FM Approvals LLC	02-2010-8910
Intertek	02-567-7474
MET	031-697-8202
NEMKO	031-330-1700

NSF	02-511-8348
SGS	02-709-4500
TÜV Rheinland	02-860-9860
TÜV SÜD	02-3215-1100
UL	02-2009-9100

강제인증 대상인 37개 품목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귀사제품은 강제인증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으나 정확한 분류는 **문의하신 제품의 상세한 사양**을 근거로 직접 판단하시거나 인증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7개 품목 리스트와 인증 절차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ETL > NRTL 대상품목 <http://www.etl.re.kr/foreign/usa01.html#대상품목>

※ 강제품목이 아닐 경우 NRTL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참고자료**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미국 > NRTL

<http://www.certinfo.or.kr/search.do?query=NRTL>

- KITA > 국가별 인증정보 (국가명 미국 입력, 검색조건 nrtl 입력)

http://www.kita.net/trade/marketing/regulation.jsp?cmd_id=RGT2003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전자파 규제

전자파 발생장치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은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이며, 일반적인 전기전자기기부터, 의료기기, 케이블 모뎀 등의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FCC는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규제하며, 의도적, 비의도적 전자파사용, 전자파 발생의 정도 등에 따라 FCC 적합증명 절차와 시험요건, 마킹요건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FCC 절차

FCC절차는 검증 (verification), 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mpliance), 인증 (certification)이 있으며, 각 절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증: 제조자 시험 가능.

* 적합선언: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또는 A2LA(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소

- NVLAP: <http://ts.nist.gov/standards/scopes/programs.htm>

- A2LA: <http://www.a2la.org/dirsearchnew/newsearch.cfm>

* 인증: FCC로부터 지정된 시험소 <https://apps.fcc.gov/oetcf/eas/reports/TestFirmSearch.cfm>

귀사 제품이 정확히 어떤 FCC절차에 적용되는지는 귀사제품 사양을 근거로 해당 인증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관으로 산업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를 안내해드리오니 아래의 연락처로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자세한 정보 및 시료를 보내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FCC 관련 시험 및 인증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담당자: 허 권 과장

연락처: 053-584-9218

※ **참고자료** 해외인증정보시스템 > FCC (유무선통신): <http://certinfo.or.kr/viewCert.do?certNo=179>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일반 소비자제품 규제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www.cpsc.gov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인증을 발행하는 인증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불량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사후관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안전규격을 지키지 않은 불량제품에 대한 규제와 리콜을 담당합니다.

모든 소비자제품은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CPSC)의 규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연성 물질이나 화재위험성에 대해 CPSIA법에 근거하여 CPSC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체 시험을 통한 규정만족 및 사후관리

CPSC에는 어린이제품을 제외하고 사전 인증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가 소비자 제품 판매전에 반드시 강제 규제되는 요건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 CPSC > Regulations, Mandatory Standards and Bans (제품별 CPSC의 규제, 강제규격 목록)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Regulations-Mandatory-Standards-Bans/>

제품에 적용되는 강제 규제가 없더라도 제조자/유통업자는 미국 시장에 안전한 제품을 유통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의 모든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안전규격 검토 후 해당규격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CPSC의 강제규제사항이 없을 경우 업체 자체적으로 이를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임의인증 및 시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CPSC는 시장 감시 및 부적합 신고 제도를 통해 이의 이행을 검사합니다. 만약 귀사의 제품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일반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는 CPSC의 리콜 및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삼성 Galaxy Note7 스마트폰의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사고로 인한 CPSC 리콜명령 사례

- Samsung Recalls Galaxy Note7 Smartphones Due to Serious Fire and Burn Hazards

<https://www.cpsc.gov/Recalls/2016/samsung-recalls-galaxy-note7-smartphones>

- Samsung Expands Recall of Galaxy Note7 Smartphones Based on Additional Incidents with Replacement Phones: Serious Fire and Burn Hazards

<https://www.cpsc.gov/Recalls/2016/samsung-expands-recall-of-galaxy-note7-smartphones-based-on-additional-incidents-with>

▶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 안전 인증 (민간 임의)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는 원칙적으로 민간/자율인증으로 국가 강제인증은 아닙니다. 자발적 인증으로 미국 세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미비 시 적발되는 항목은 아니나 미국에서 유통되는 산업 제품 전반적으로 UL 인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권장되는 인증입니다. 미국 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제품에 일치하는 UL규격이 따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부 재질이나 제품 특성 등의 대해 적용 가능한 규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UL 규격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UL규격이 있다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품목에 따라, 그리고 시험이 국내 시험소에서 이루어지는지 외국 소재 시험소에서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이 달라지므로 상세사항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인증기관

UL의 한국 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후 UL 인증 취득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인증획득대행기관: UL Korea

웹페이지: <https://korea.ul.com/>

고객지원: Tel: 02-2009-9100 / Fax: 02-2009-9400 / E-mail: customerservice.kr@kr.ul.com

관련규격

UL에 귀사제품이 적용되는 관련규격이 있다면 해당 규격에 대해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링크를 검색 후 적용범위(scope) 확인 가능합니다. 규격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구매 후 열람하실 수 있으며 본 규격은 저작권 문제로 무료 배포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규격검색 및 구매 UL > Standards access <https://standardscatalog.ul.com/>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관련 UL규격을 먼저 파악한 후 인증진행이 가능하며 이는 귀사제품의 사양과 해당규격의 scope(적용범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제품사양에 따라 UL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제품에 대한 용도와 사양이 담긴 영문 정보를 근거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 UL인증 개요 및 절차, 필요서류 등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UL

http://www.exportcenter.go.kr/standard/info/guide_standard/info_pdf2/UL.pdf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 UL <http://www.certinfo.or.kr/viewCert.do?certNo=508>

※ **자료 출처**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www.certinfo.or.kr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 https://www.exportcenter.go.kr/standard/info/guide_standard.jsp

리튬이온전지 규제 (리튬이온 폴리머) ; 건전지 내장제품일 경우

리튬이온전지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UL 안전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그 외에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리튬전지 안전인증

배터리 제조사에서 Cell 단위로 UL인증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완성품이 Pack으로 제조되면 내부 회로 등 구성이 추가되므로 Pack 제품에 대한 인증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리튬 배터리에 대한 UL 안전인증 해당 규격은 UL 1642 Standard for Lithium Batteries 이며 기타 관련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L인증 UL 1642 Standard for Lithium Batteries
https://standardscatalog.ul.com/standards/en/standard_1642_5
- UL규격 구입처
<http://ulstandards.ul.com/standards-catalog/>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 UL 안전인증
<http://www.certinfo.or.kr/viewCert.do?certNo=508>

▶ 리튬전지 운송규정

리튬 전지를 운송할 때는 운송방법에 따라 항공 위험물질규정(DGR- Dangerous Goods Regulations), 국제 해상 위험물 규정(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UN 운송매뉴얼 준수해야 합니다.

각 운송방법 별 관할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운송: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해상운송: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출처

Intertek > Guide to the UN Requirements for Lithium Battery Testing Prior to Transportation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 EwivrZ689ZPRAhUBQ5QKHR0TALQQFggaMAA&url=http%3A%2F%2Fwww.intertek.it%2FWorkArea%2FDownloadAsset.aspx%3Fid%3D34585&usg=AFQjCNFn0tTmkb8g7XFvpGzjA20ffKx6A> (다운로드 필요)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 - DGR

DGR 이란 위험물질규정 즉 Dangerous Goods Regulations 의 약자로서, 위험물질의 항공 운송에 대한 규제입니다. 2015.1.1.부로 리튬 배터리의 항공 운송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IATA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
- 위험물질 <http://www.iata.org/whatwedo/cargo/dgr/Pages/index.aspx>
- 리튬배터리 <http://www.iata.org/whatwedo/cargo/dgr/Pages/lithium-batteries.aspx>
- IATA-DGR-2019 Lithium Battery Guidance Document (2019년판 가이드선)
<https://www.iata.org/whatwedo/cargo/dgr/Documents/lithium-battery-shipping-guidelines.pdf>

이 규제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항공으로 운송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IATA DGR(항공 위험물 규제)로

불리며, UN이 분류한 각종 물질과 품목의 자세한 목록뿐만 아니라 배터리 항공 운송에 대한 적합성과 적절한 운송 조건 및 해당 건에 대한 증빙서류, 라벨링, 포장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리튬 배터리 위험 선적 적합성 준수(Lithium Battery Hazardous Shipping Compliance))

* 개정사항

2016년 4월 1일부터는 리튬 이온 및 리튬 금속 배터리를 장비 없이 여객기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항공 운송에 적용되는 국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발송인은 적용되는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조사내용은 국제 항공운송 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이하 IATA)에서 발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TA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이 규정은 <http://www.iata.org/lithiumbatteries> 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IATA > Lithium Batteries - Packing Instructions Reformatted

https://www.iata.org/html_email/CAR1002103/Lithium%20battery%20packing%20instructions.pdf

- IATA > Lithium Batteries - Significant Changes on the Way

https://www.iata.org/html_email/CAR1001654/lithium_batteries.pdf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 민간 항공 기구)

- Transport of Lithium Batteries in Accordance with the ICAO Technical Instructions - Guidance Document

<https://www.icao.int/safety/DangerousGoods/Documents/Guidance%20Material/ICAOLithiumBatteryGuidance.pdf>

- ICAO Training on Lithium Batteries

https://www.icao.int/EURNAT/Other%20Meetings%20Seminars%20and%20Workshops/SAFETY%20-%20CARGO/Lithium%20Batteries/ICAO%20Training%20Lithium%20Batteries_KRooney.pdf

- ICAO Council Prohibits Lithium-Ion Cargo Shipments on Passenger Aircraft

<https://www.icao.int/Newsroom/Pages/ICAO-Council-Prohibits-Lithium-Ion-Cargo-Shipments-on-Passenger-Aircraft.aspx>

- Additional Clarifications on New Lithium Ion Shipment Restrictions

<https://www.icao.int/Newsroom/Pages/Additional-Clarifications-on-New-Lithium-Ion-Shipment-Restrictions.aspx>

※ 참고

Transportation of Lithium Batteries - 2018 Training Presentation

https://www.cisco.com/c/dam/en_us/about/supplier/lithium-battery-transport-training.pdf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해상운송의 경우 IMO의 위험물 품목별 해상운송 국제규정(IMDG Code)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규정에서는 품목별로 적용되는 UN과 그 운송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포함)의 UN번호는 리튬이온배터리 (UN 3480), 리튬이온배터리-기기에 장착된 것 또는 함께 포장된 것 (UN 3481)이며 이에 따른 운송규정은 아래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의 국문 운송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튬금속(합금)/리튬이온 셀/배터리 바위험물 조건 (SP188)				
항목	리튬금속/합금		리튬이온	
	셀(CELL)	배터리(BATTERY)	셀(CELL)	배터리(BATTERY)
리튬 함량	1 g 이하			
총 리튬함량		2 g 이하		
정격 와트-시 (Watt-hour rating)			20 Wh 이하	100 Wh 이하
제품 시험	유엔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설명서(Manual of Tests and Criteria) 제3편 제38.3항의 각 시험요건에 적합함이 증명될 것			

* 자료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 위험물 운송규정 - 리튬이온배터리/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포함 (UN 3480)

<http://www.komdi.or.kr/ebook/Trans/UN3480.pdf>

한국 해사위험물검사원 > 위험물 운송규정 - 리튬이온배터리 - 기기에 장착된 것 또는 기기와 함께 포장된 것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포함 (UN 3481)

<http://www.komdi.or.kr/ebook/Trans/UN3481.pdf>

시험결과를 제출하는 양식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자유양식으로 작성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1577-8863 담당자 통화내용)

따라서 해상운송의 경우 IEC 62133의 8.3.8항에 따른 UN 운송규정 38.3 시험결과를 CB 시험 성적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으로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출하려는 제품이 리튬이온배터리(UN번호: 3480/3481)를 사용할 경우 선적 (해상운송 경우) 시 위험물 해상운송 국제규정 (IMDG code)에 따라 정격용량이 100 Wh를 초과 (배터리 기준)하면 9등급 위험물로 분류되며, UN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설명서(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제3편 38.3항에 따른 시험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 해사위험물검사원 > 위험물 품목별 해상운송 국제규정: 리튬이온 배터리 (UN 3480)

<http://www.komdi.or.kr/ebook/Trans/UN3480.pdf>

- 한국 해사위험물검사원 > 위험물 품목별 해상운송 국제규정: 리튬이온배터리-기기에 장착된 것 또는 함께 포장된 것 (UN 3481)

<http://www.komdi.or.kr/ebook/Trans/UN3481.pdf>

UN

UN은 국제운송의 감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운송방법에 따른 관할기관의 정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UN에서는 권장사항으로 매뉴얼을 제작한 것이며, 이를 도입한 기관에 의하여 운송규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국제환경규제 - 유럽연합, 리튬배터리의 국가 간 운송 요건 발표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0592

PHMSA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또한 미국은 교통부(DOT) 산하 파이프라인 및 위험 물질 안전청(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이하 PHMSA)에서 자국 영토 내 대량 운송되는 모든 리튬전지를 위험 물질(HazMats)로 분류하고 대량의 리튬전지를 사용하거나 이동시킬 때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HMSA는 2014년 8월 6일자로 리튬 배터리 운송관리조항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T > PHMSA >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ation of Lithium Batteries; Final Rule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4/08/06/2014-18146/hazardous-materials-transportation-of-lithium-batteries>

- New DOT 2018 Standards for Lithium Battery Transportation

<http://hazwoperhazmattraining.com/blog/dot/nnew-dot-2018-standards-for-lithium-battery-transportation/>

(1) 유엔모델규정(UN Model Regulation)에 따른 개정

- 모든 리튬 배터리는 배터리가 운송을 견딜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엔 모델규정의 인증시험(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을 통과해야 함

(2) 국제기준에 따른 특정 리튬배터리(8개 이하의 리튬전지, 2개 이하의 소형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는 운송을 허용하는 예외조항 적용

- 리튬전지(Cell) : 1개당 리튬 함량 1g이하, 전력량 20Wh 이하

- 리튬배터리(Battery) : 1개당 리튬 함량 2g이하, 전력량 100Wh이하

- 기기와 함께 포장되었거나 내장된 소형 리튬 배터리

(3)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항공위험물 운송에 대한 규칙에 따른 리튬 배터리 분류 개정

- 포장 지시사항(Packing instruction)을 결정하는 리튬 배터리 분류

① 리튬이온 배터리 Lithium ion batteries(PI 965)

② 기기와 함께 포장된 리튬이온 배터리 Lithium ion batteries packed with equipment(PI 966)

③ 기기에 내장된 리튬 이온 배터리 Lithium ion batteries contained in equipment (PI 967)

④ 리튬 메탈 배터리 Lithium metal batteries(PI 968)

⑤ 기기와 함께 포장된 리튬 메탈 배터리 Lithium metal batteries packed with equipment(PI 969)

⑥ 기기에 내장된 리튬 메탈 배터리 Lithium metal batteries contained in equipment (PI 970)

- 리튬 이온 전지와 배터리의 리튬 함량 기준을 전력소모량 기준으로 변경

· 변경 전 : ELC(equivalent lithium content)

· 변경 후 : 전력소모량(Watt-hour ; Wh) 기준 사용

(4) 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있는 리튬 배터리 운송조항 추가

- 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있는 상태로 운송되는 리튬 배터리는 선박, 차량, 철도를 통해서만 운송 가능
- 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있는 상태로 운송되는 모든 리튬 배터리는 전지 및 배터리를 개별로 밀봉하는 비금속질의 내부 포장 의무화
- 내부 포장은 불연성, 비전도성, 흡수성을 갖춘 완충재로 싸여있어야 함
- 외부 포장에는 손상/결함 리튬 배터리를 나타내는 지시문 부착 의무화

그 밖에 운송규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Vincent Babich or Steven Webb

Standards and Rulemaking Division,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telephone (202) 366-8553

▶ 그 외 리튬전지 규제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외에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에서는 리튬전지에 대한 임의규격을 지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 규격 등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PSC > Voluntary Standards > Batteries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Voluntary-Standards/Topics/Batteries/>

폐충전지에 대한 환경규제

또한 리튬전지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연간 총매출 100만달러 이하 제외)에게는 충전지 재활용법(The 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Act of 2006)에 따라 폐충전지 수거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환경규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트레이드내비 > 환경규제정보 (미국 충전지 재활용법 검색)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21&ftaNatnCd=US&natnCd=&S ENG=TB2US0000000035>

참 고

▶ 유의사항

다만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 강제인증보다는 각종 자율/민간 인증이 통용되는 형태로 사전인증제도 보다는 리콜/처벌 등의 사후 엄격한 관리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보증할 책임은 제조자/수입업자에 두고 있습니다.

▶ 주별 규제

또한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고 있으며 **주마다 규제방법이 다릅니다**. 주 정부가 민간인증을 채택하여 강제하거나 주별 규제를 따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자율인증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강제인증과 같이 통용될 수 있으며 **해당품목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내 강제처럼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별 규제 및 임의인증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지 바이어/수입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요구되는 인증이나 규제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인증이나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주마다 그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협회인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몇몇 주는 추가적으로 더욱 엄격한 주별 규제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마다 규제여부가 상이하므로 별도로 주별 규제검토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문 의 처

위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미국 현지의 수입업체, 현지 KOTRA 무역관 또는 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현지에서 통용되고 있으나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띄고 있는 인증도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업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조자가 현지 시장동향과 주요 타겟층 설정 및 소비자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지 동향이나 업계 요구사항,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 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북미지역본부 <http://www.kotra.or.kr/KBC/northamerica/KTMIUI010M.html>

뉴욕무역관(미국) / 달라스무역관(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미국) / 마이애미무역관(미국) / 시카고무역관(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미국) / 워싱턴무역관(미국)

- KOTRA trade doctor <http://tradedoctor.kotra.or.kr/bp/main/BPMAIN040M.html?>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의 각종 해외인증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korea_ktr/notice/notice_read.jsp?board_type=KOREA_KTR&num=8890

※ 주 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페이지의 일부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역시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 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기간, 가격 등의 상세 실무정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컨택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